예 산 총 칙

제1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회	계		명	세입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	비	ם
	총			계	1,786,784,301	53,603,529		
	길	반	회	계	1,655,928,777	49,677,863		
ĵ	투	별	회	계	130,855,524	3,925,666		
기 타	소			계	19,774,958	593,249		
	의	료 급	여	기 금	7,925,199	237,756		
	장기	미집행도시기	획시설	대지보상	118,579	3,557		
특 별	주	택	사	업	1,288,067	38,642		
^밀 회	농	공지구	조 성	사 업	218,743	6,562		
계	수	질 개	선	사 업	1,016,857	30,506		
	주	え	<u>:</u>	장	9,207,513	276,226		
공 기 업	소			계	111,080,566	3,332,417		
	상	4	È	F	45,673,236	1,370,197		
	하	4	È	도	59,565,441	1,786,963		
	공	영 개	발	사 업	5,841,889	175,257		

제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 으로 한다.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해당없음" 으로 한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136,975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1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